

第285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2月29日(火)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92.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계속)
93.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
9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11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김진표 · 김재윤 · 노영민 · 권선택 · 이시중 · 양승조 · 이광재 · 송민순 · 오제세 · 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11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이계진 · 강성천 · 윤석용 · 임태희 · 강창일 · 조전혁 · 현경병 · 손범규 · 안상수 · 김성수 · 정갑윤 · 임두성 · 구본철 의원 발의)(계속) 11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강창일 · 강길부 · 김우남 · 윤석용 · 김정권 · 송민순 · 양승조 · 장세환 · 임두성 · 송영선 · 안상수 · 김성순 · 이미경 · 박선숙 · 최철국 · 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11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김희철 · 이한성 · 김종률 · 안민석 · 박기춘 · 이명규 · 김재균 · 안상수 · 문희상 · 장세환 · 이혜훈 · 최문순 · 이진삼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11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박종희 · 양정례 · 이한성 · 홍정욱 · 이정선 · 정하균 · 김소남 · 유성엽 · 신상진 · 이화수 · 이진삼 · 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11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홍정욱 · 정하균 · 이진삼 · 김성곤 · 박은수 · 이한성 · 김성태 · 김희철 · 강기갑 · 홍희덕 · 권영길 · 이정희 의원 발의)(계속) 1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김성수 · 유성엽 · 유기준 · 안상수 · 김태원 · 구본철 · 신상진 · 강석호 · 박종희 · 홍장표 · 김종률 · 안효대 · 이진삼 · 이한성 · 송광호 · 유재중 · 황우여 · 김성곤 · 이해봉 · 박대해 · 김영우 · 양정례 · 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11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유정복 · 이한성 · 양정례 · 유성엽 · 구본철 · 남경필 · 손숙미 · 안홍준 · 신상진 · 정하균 · 이진삼 · 이정선 · 박영아 · 황우여 · 박대해 · 정해걸 · 윤영 의원 발의)(계속) 11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창일 · 김진표 · 김충조 · 박기춘 · 백재현 · 신학용 · 오제세 · 우제창 · 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1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정해걸 · 정영희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1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유정현 · 유성엽 · 장세환 · 이진삼 · 김종률 · 안홍준 · 이한성 · 정하균 · 김세연 · 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11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조해진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1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이혜훈 · 나경원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11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한선교 · 구분철 · 양정례 · 강석호 · 이한성 · 이진삼 · 정의화 · 유성엽 · 안상수 · 정해걸 · 이성현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11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강창일 · 전병헌 · 정장선 · 김진표 · 양정례 · 우제창 · 오제세 · 박병석 · 김재윤 · 양승조 · 안민석 · 전해숙 · 최재성 · 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11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노철래 · 이한성 · 김소남 · 김성조 · 구분철 · 정해걸 · 조윤선 · 강길부 · 김영우 · 김학송 · 양정례 · 송훈석 · 신성범 · 김동성 · 이화수 · 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12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유기준 · 양정례 · 백성운 ·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 윤석용 의원 발의)(계속) 12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 · 강석호 · 강승규 · 김성태 · 김태원 · 김효재 · 나경원 · 남경필 · 박종희 · 배은희 · 백성운 · 손범규 · 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12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해훈 · 김재윤 · 김동철 · 광정숙 · 이정희 · 이미경 · 이애주 · 최문순 · 신낙균 · 김금래 · 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12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이종걸 · 박기춘 · 이광재 · 양승조 · 장세환 · 김희철 · 안규백 · 신학용 · 김충조 · 이용섭 · 김성순 · 김우남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박기춘 · 최재성 · 양승조 · 김종률 · 조경태 · 김충조 · 김재윤 · 박선숙 · 이광재 의원 발의)(계속) 12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 · 변재일 · 우제창 · 이광재 · 김종률 · 백재현 · 김희철 · 이명수 · 노영민 · 오제세 · 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12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12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정해걸 · 박대해 · 허태열 · 안상수 · 이해훈 · 박보환 · 이한성 · 정하균 · 박종희 · 김종률 · 이진삼 · 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12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 · 권영진 · 김성수 · 김성태 · 김을동 · 김태환 · 노철래 · 백성운 · 안상수 · 유성엽 · 이재선 · 이철우 · 정갑윤 · 정영희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1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김희철 · 이한성 · 이종혁 · 백성운 · 김재윤 · 이진삼 · 이인기 · 구분철 · 정병국 · 박종희 · 임동규 · 김효재 · 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12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 · 김장수 · 김용구 · 변웅전 · 이해봉 · 임영호 · 이상민 · 류근찬 · 김영진 · 김낙성 · 김창수 의원 발의)(계속) 12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강석호 · 김광립 · 김태환 · 안상수 · 유기준 · 유재중 · 이경재 · 정해걸 · 정희수 · 조원진 · 최구식 · 현기환 · 홍사덕 · 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12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김정권 · 강석호 · 김영록 · 이무영 · 장세환 · 강운태 · 정하균 · 황우여 · 우제창 · 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12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 · 최규식 · 이무영 · 권경석 · 조진형 · 강기정 · 김유정 · 김충조 · 김희철 · 이윤석 · 김태원 · 신지호 · 유정현 · 이은재 · 이인기 · 장제원 · 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12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이한성 · 이진삼 · 김정권 · 유기준 · 신상진 · 구분철 · 박종희 · 송영선 · 김희철 · 원희목 · 김우남 · 김재윤 · 이정선 · 최영희 · 최인기 · 김소남 · 김효재 · 강석호 · 손범규 · 박보환 · 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12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2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안민석 · 송영길 · 최영희 · 김동철 · 강기정 · 변재일 · 이석현 · 문학진 · 김춘진 · 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12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임동규 · 이한성 · 김정훈 · 이군현 · 이춘식 · 이윤성 · 최병국 · 정영희 · 허천 · 신성범 · 백성운 의원 발의)(계속)	13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이한성 · 임동규 · 유성엽 · 김정훈 · 이군현 · 이춘식 · 이윤성 · 최병국 · 정영희 · 허천 · 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13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조운선 · 전해숙 · 이계진 · 안홍준 · 조문환 · 송광호 · 주호영 · 양승조 · 김상희 · 김재운 · 이윤석 · 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13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유정현 · 김성희 · 정진섭 · 정갑윤 · 권경석 · 강성천 · 손숙미 · 홍장표 · 고승덕 · 유재중 · 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13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최구식 · 성운환 · 유승민 · 이한성 · 유성엽 · 나경원 · 양정례 · 김성곤 · 정하균 · 김정훈 · 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13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최구식 · 박민식 · 유승민 · 유기준 · 김무성 · 김광립 · 유성엽 · 박종희 · 이종혁 · 이명규 · 조문환 · 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13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최구식 · 박민식 · 유승민 · 유기준 · 김무성 · 김광립 · 유성엽 · 이종혁 · 이명규 · 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13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송민순 · 유성엽 · 정미경 · 김기현 · 이한성 · 권영진 · 안상수 · 임해규 · 김성수 · 이시종 의원 발의)(계속)	13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심대평 · 김용구 · 이재선 · 이용희 · 변웅전 · 김낙성 · 이명수 · 임영호 · 이회창 · 김창수 · 박상돈 · 류근찬 · 이진삼 · 조순형 · 이영애 · 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13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양승조 · 홍재형 · 강창일 · 유원일 · 유성엽 · 안민석 · 권영길 · 김재균 · 강기갑 의원 발의)(계속)	13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강창일 · 양승조 · 김동철 · 김재균 · 김우남 · 최재성 · 최인기 · 이미경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13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안상수 · 유기준 · 정해걸 · 황우여 · 이화수 · 이인기 · 오제세 · 안효대 · 이한성 · 손범규 · 배영식 · 김충환 · 김태환 · 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13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진표 · 김재운 · 천정배 · 안민석 · 신학용 · 박지원 · 조배숙 · 김희철 · 김춘진 · 김영록 · 최규성 · 정해걸 · 이춘식 · 김성순 · 강운태 의원 발의)(계속)	13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 · 박민식 · 이화수 · 이계진 · 최욱철 · 김우남 · 정해걸 · 이사철 · 조문환 · 이윤석 · 김영우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13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 · 우윤근 · 김창수 · 송훈석 · 임영호 · 최인기 · 이재선 · 심대평 · 최철국 · 류근찬 · 김용구 · 이영애 · 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13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우남 · 이미경 · 김동철 · 양승조 · 강창일 · 최영희 · 최인기 · 전해숙 · 서갑원 · 이용섭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13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이한성 · 주광덕 · 신영수 · 김성순 · 차명진 · 김종률 · 우제창 · 김성태 · 정해걸 · 윤석용 · 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13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변웅전 · 심대평 · 이회창 · 박선영 · 이재선 · 이명수 · 김용구 · 김낙성 · 이진삼 · 류근찬 · 임영호 · 박상돈 · 조순형 · 이상민 · 이영애 · 김창수 · 문국현 의원 발의)(계속)	13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13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서갑원 · 안민석 · 양승조 · 이광재 ·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14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동철 · 서갑원 · 이미경 · 김재균 · 김우남 · 김상희 · 이석현 · 이용삼 · 김충조 의원 발의)(계속) 14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이혜훈 · 유기준 · 김정권 · 김태원 · 유승민 · 이화수 · 손범규 · 이해봉 · 유성엽 · 안상수 · 윤상현 · 신영수 · 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14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진성호 · 황우여 · 안상수 · 안효대 · 권경석 · 임두성 · 고승덕 · 원희목 · 김성수 · 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14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 · 노철래 · 정영희 · 송영선 · 박기춘 · 강운태 · 손범규 · 송민순 · 김을동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4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운환 의원 대표발의)(성운환 · 이한성 · 임동규 · 이정선 · 이성현 · 한선교 · 박기춘 · 변재일 · 박상돈 · 박순자 · 원유철 · 정해걸 · 강석호 · 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14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조문환 · 손범규 · 윤석용 · 강석호 · 박준선 · 황영철 · 이성현 · 이사철 · 남경필 · 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14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유원일 · 신영수 · 현경병 · 안효대 · 이정선 · 이한성 · 이윤성 · 손범규 · 오제세 · 황영철 · 이낙연 · 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14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양승조 · 변재일 · 천정배 · 김창수 · 이종걸 · 강창일 · 김영진 · 장세환 · 김효석 · 이미경 · 강기정 · 박상돈 · 이명수 · 박선숙 · 문학진 · 강봉균 · 우제창 · 김희철 · 최규성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14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송민순 · 안규백 · 박주선 · 우제창 · 강창일 · 이미경 · 최규식 · 박기춘 · 이두아 · 김재윤 · 이인기 · 이낙연 · 서종표 · 문학진 · 김상희 · 김춘진 · 전해숙 의원 발의)(계속) 14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성수 · 안효대 · 이정선 · 이성현 · 이화수 · 임두성 · 김효재 · 이한성 · 김장수 의원 발의)(계속) 14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주영 · 김창수 · 심대평 · 이재선 · 권선택 · 안민석 · 김낙성 · 임영호 · 박상돈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14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 · 김을동 · 김성수 · 노철래 · 박대해 · 김정권 · 정영희 · 이한성 · 정하균 · 심대평 의원 발의)(계속) 14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권선택 · 김창수 · 심대평 · 이명수 · 이상민 · 이재선 · 이용희 · 임영호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4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임동규 · 신영수 · 정수성 · 김영선 · 박상돈 · 강명순 · 정해걸 · 정갑윤 · 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14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손숙미 · 이정선 · 강성천 · 고승덕 · 신지호 · 배은희 · 여상규 · 나성린 · 강석호 · 윤석용 · 정미경 · 김금래 · 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14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김소남 · 손숙미 · 정미경 · 강명순 · 공성진 · 이군현 · 이애주 · 이종구 · 이정현 · 이화수 · 김옥이 · 이은재 · 조윤선 · 김금래 · 안홍준 · 이한성 · 권경석 · 황진하 · 정옥임 · 신상진 · 김성수 · 강승규 · 이병석 · 박영아 의원 발의)(계속) 14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손범규 · 이명수 · 이한성 · 임두성 · 김성수 · 김낙성 · 고승덕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14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유기준 · 강성천 · 유성엽 · 황우여 · 한선교 · 강석호 · 정미경 · 박준선 · 이명수 · 김을동 · 박상은 의원 발의)(계속) 14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 · 김영록 · 신성범 · 김종률 · 조진래 · 이인제 · 송훈석 · 송광호 · 이용삼 · 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15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최재성 · 조정태 · 이윤석 · 박병석 · 김유정 · 이미경 · 신낙균 · 김충조 · 오제세 · 최철국 · 김동철 · 최규식 · 이강래 · 안규백 · 김재균 · 원혜영 · 김부겸 · 강기정 · 장세환 · 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5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원유철 · 안효대 · 강길부 · 이윤석 · 김성조 · 최병국 · 신성범 · 이진복 · 김소남 · 김기현 · 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15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강성천 · 김성수 · 김성희 · 김세연 · 박대해 · 박민식 · 서상기 · 이종혁 · 이화수 · 정갑윤 · 조원진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5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 · 신학용 · 정영희 · 유기준 · 최영희 · 유성엽 · 손범규 · 이해봉 · 이인기 · 박은수 · 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15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조영택 · 최영희 · 송민순 · 김춘진 · 백원우 · 전현희 · 최재성 · 박은수 · 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15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신학용 · 김상희 · 양승조 · 박은수 · 김성순 · 강운태 · 우제창 · 백재현 · 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15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김성조 · 이한성 · 한선교 · 조문환 · 유일호 · 임동규 · 성운환 · 윤영 · 정옥임 · 배은희 의원 발의)	15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 · 양승조 · 송민순 · 강창일 · 김영진 · 김유정 · 조영택 · 박선숙 · 이시중 · 조정태 의원 발의)	15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김재윤 · 양승조 · 강창일 · 김창수 · 박상돈 · 이석현 · 강기정 · 김재균 · 김영진 · 박은수 · 안규백 · 김부겸 · 최영희 · 이미경 · 김성순 · 조배숙 · 박지원 · 박기춘 · 김영환 · 조영택 · 안민석 · 김정권 · 우제창 · 문학진 · 이용섭 · 변재일 의원 발의)	15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동철 · 이미경 · 김효석 · 이석현 · 백재현 · 홍재형 · 양승조 · 안민석 · 김유정 · 서갑원 · 최영희 · 김상희 · 김재균 의원 발의)	15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홍준표 · 진성호 · 이한성 · 이명수 · 한선교 · 권영세 · 박준선 · 이명규 · 김성희 의원 발의)	15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원희목 · 현기환 · 김정훈 · 현경병 · 김정권 · 권택기 · 허천 · 신지호 · 진수희 · 김소남 · 장제원 의원 발의)	15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정갑윤 · 김태원 · 김소남 · 정수성 · 이윤석 · 신지호 · 안경률 · 권경석 · 이명수 · 이은재 · 이범래 · 유정현 · 김영우 · 차명진 · 심재철 의원 발의)	15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김태원 · 김소남 · 정수성 · 이윤석 · 신지호 · 안경률 · 권경석 · 이명수 · 이은재 · 이범래 · 유정현 · 김영우 · 차명진 의원 발의)	15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
8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이달곤 · 정희수 · 주성영 · 고승덕 · 이주영 · 임해규 · 이한성 · 원희목 · 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15
9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91.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최육철 · 이시중 · 정해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5
92.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5
93.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홍희덕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	15
9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 · 우제창 · 변재일 · 이광재 · 백재현 · 김희철 · 이명수 · 노영민 · 오제세 · 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15
9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희철 · 이용삼 · 김재균 · 김동철 · 송영길 · 양승조 · 강창일 · 조영택 · 이미경 · 김우남 · 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16

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최영희 · 김동철 · 강기정 · 변재일 · 안민석 · 이석현 · 문학진 · 김춘진 · 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16
9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 · 김성태 · 신성범 · 김선동 · 권택기 · 박민석 · 정태근 · 주광덕 · 황영철 · 김성식 · 조전혁 · 이한성 · 현기환 · 서상기 · 김세연 · 이인기 · 윤석용 · 남경필 의원 발의)(계속) 16
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정태근 · 현경병 · 백성운 · 강승규 · 조문환 · 김영우 · 조진래 · 이화수 · 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16
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진수희 · 전여옥 · 이혜훈 · 황진하 · 이계진 · 정진섭 · 허천 · 김광림 · 나경원 · 김기현 · 김금래 · 신성범 · 임해규 의원 발의) 16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신성범 · 이범래 · 유정현 · 성윤환 · 장제원 · 이한성 · 권영진 · 손범규 · 김금래 · 강석호 · 원희목 · 신지호 · 정미경 · 안효대 의원 발의) 16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6
1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양정례 · 고승덕 · 김성태 · 정해걸 · 정하균 · 김소남 · 정양석 · 이종구 · 유성엽 · 신상진 · 이진삼 · 임두성 · 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16
10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유기준 · 양정례 · 백성운 · 고승덕 ·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의원 발의)(계속) 16
1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발의)(김희철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16
1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강석호 · 김광림 · 김태환 · 안상수 · 유기준 · 유재중 · 이경재 · 정해걸 · 정희수 · 조원진 · 최구식 · 현기환 · 홍사덕 · 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16
1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6
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심대평 · 김용구 · 이재선 · 이용희 · 변웅진 · 김낙성 · 이명수 · 임영호 · 이회창 · 김창수 · 박상돈 · 류근찬 · 이진삼 · 조순형 · 이영애 · 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16
1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김정권 · 김성수 · 신지호 · 임해규 · 정해걸 · 이범래 · 김소남 · 이은재 · 김성조 · 이명규 의원 발의)(계속) 16
10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원유철 · 백성운 · 이군현 · 임동규 · 현경병 · 최병국 · 진성호 · 김소남 · 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16
1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재균 · 강창일 · 김우남 · 김동철 · 이미경 · 최규식 · 이석현 · 김효석 · 최영희 · 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16
1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안민석 · 강창일 · 김종률 · 전해숙 · 유성엽 · 김성곤 · 원혜영 · 이두아 · 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16
1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 · 고승덕 · 김세연 · 김영진 · 김성태 · 김충환 · 김춘진 · 노철래 · 박진 · 박상운 · 박종희 · 여상규 · 이경재 · 이주영 · 이철우 · 유기준 · 장윤석 · 정미경 · 조전혁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16
1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정태근 · 현경병 · 백성운 · 강승규 · 조문환 · 김영우 · 조진래 · 이화수 · 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16
1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이정희 · 홍희덕 · 권영길 · 강기갑 · 박선영 · 김춘진 · 신낙균 · 박은수 · 유성엽 · 조승수 · 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16
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최철국 · 전현희 · 이춘석 · 우윤근 · 박은수 · 노영민 · 김재균 · 김동철 · 박상돈 · 양승조 · 김성곤 · 이용섭 의원 발의) 17

1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동철 · 김효석 · 홍재형 · 양승조 · 안민석 · 김유정 · 서갑원 · 최영희 · 김상희 · 김재균 의원 발의)	17
1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강창일 · 정동영 · 강운대 · 조승수 · 박선숙 · 김춘진 · 김우남 · 김영진 · 강기갑 ·곽정숙 · 이낙연 의원 발의)	17
1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손범규 · 이정현 · 신성범 · 임영호 · 이해봉 · 박대해 · 황우여 · 최구식 · 안효대 의원 발의)	17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7
1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17
12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 · 노철래 · 정영희 · 송영선 · 박기춘 · 강운대 · 손범규 · 송민순 · 김을동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7
12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이한성 · 안상수 · 오제세 · 홍장표 · 임동규 · 주광덕 · 안효대 · 손범규 · 김소남 · 정미경 · 나경원 · 이성현 · 유재중 · 유성엽 · 박은수 · 진성호 · 이정현 · 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17
12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윤석용 · 고승덕 · 김태원 · 정병국 · 정양석 · 김동성 · 신상진 · 남경필 · 이화수 · 황영철 · 장광근 · 이윤성 · 김효재 의원 발의)(계속)	17
12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종률 · 정하균 · 강기정 · 양승조 · 유선호 · 박기춘 · 이낙연 · 서종표 · 김희철 · 홍희덕 · 이윤석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7
1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이인제 · 이재선 · 현기환 · 강창일 · 김세웅 · 윤영 · 김성순 · 신영수 · 박상은 의원 발의)(계속)	17
12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양승조 · 유성엽 · 최규성 · 안상수 · 박기춘 · 이화수 · 안홍준 · 김재균 · 김희철 · 정갑윤 · 김충환 · 정하균 · 황우여 · 장세환 · 김성수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17
1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7
12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임두성 · 김재윤 · 김성수 · 이한성 · 유성엽 · 안홍준 · 신상진 · 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17
1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17

(12시46분 개의)

○위원장 김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9월 23일, 24일 25일 3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법들에 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우리 특위에 회부된 10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특위에 구성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정당및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및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각각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를 포함해서 10회와 7회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12일 이후에 우리 특위에 회부되어 온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합의하여 바로 소위에 회부해서 기존의 법안들과 함께 병합심사하도록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장윤석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서갑원 정당및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양 소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그동안 공직선거법과 관련 청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심사해 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심사해 온 정당및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김진표 · 김재윤 · 노영민 · 권선택 · 이시중 · 양승조 · 이광재 · 송민순 · 오제세 · 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이계진 · 강성천 · 윤석용 · 임태희 · 강창일 · 조전혁 · 현경병 · 손범규 · 안상수 · 김성수 · 정갑윤 · 임두성 · 구본철 의원 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강창일 · 강길부 · 김우남 · 윤석용 · 김정권 · 송민순 · 양승조 · 장세환 · 임두성 · 송영선 · 안상수 · 김성순 · 이미경 · 박선숙 · 최철국 · 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김희철 · 이한성 · 김종률 · 안민석 · 박기춘 · 이명규 · 김재균 · 안상수 · 문희상 · 장세환 · 이혜훈 · 최문순 · 이진삼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박종희 · 양정례 · 이한성 · 홍정욱 · 이정선 · 정하균 · 김소남 · 유성엽 · 신상진 · 이화수 · 이진삼 · 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홍정욱 · 정하균 · 이진삼 · 김성곤 · 박은수 · 이한성 · 김성태 · 김희철 · 강기갑 · 홍희덕 · 권영길 · 이정희 의원 발의)(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김성수 · 유성엽 · 유기준 · 안상수 · 김태원 · 구본철 · 신상진 · 강석호 · 박종희 · 홍장표 · 김종률 · 안효대 · 이진삼 · 이한성 · 송광호 · 유재중 · 황우여 · 김성곤 · 이해봉 · 박대해 · 김영우 · 양정례 · 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유정복 · 이한성 · 양정례 · 유성엽 · 구본철 · 남경필 · 손숙미 · 안홍준 · 신상진 · 정하균 · 이진삼 · 이정선 · 박영아 · 황우여 · 박대해 · 정해걸 · 윤영 의원 발의)(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창일 · 김진표 · 김충조 · 박기춘 · 백재현 · 신학용 · 오제세 · 우제창 · 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정해걸 · 정영희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유정현 · 유성엽 · 장세환 · 이진삼 · 김종률 · 안홍준 · 이한성 · 정하균 · 김세연 · 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조해진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이혜훈 · 나경원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한선교 · 구본철 · 양정례 · 강석호 · 이한성 · 이진삼 · 정의화 · 유성엽 · 안상수 · 정해걸 · 이성현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강창일 · 전병현 · 정장선 · 김진표 · 양정례 · 우제창 · 오제세 · 박병석 · 김재윤 · 양승조 · 안민석 · 전해숙 · 최재

성·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노철래·이한성·김소남·김성조·구본철·정해걸·조윤선·강길부·김영우·김학송·양정례·송훈석·신성범·김동성·이화수·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윤석용 의원 발의)(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강석호·강승규·김성태·김태원·김효재·나경원·남경필·박종희·배은희·백성운·손범규·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혜훈·김재윤·김동철·곽정숙·이정희·이미경·이애주·최문순·신낙균·김금래·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이종걸·박기춘·이광재·양승조·장세환·김희철·안규백·신학용·김충조·이용섭·김성순·김우남·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박기춘·최재성·양승조·김종률·조경태·김충조·김재윤·박선숙·이광재 의원 발의)(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변재일·우제창·이광재·김종률·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정해걸·박대해·허태열·안상수·이혜훈·박보환·이한성·정하균·박종희·김종률·이진삼·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권영진·김성수·김성태·김을동·김태환·노철래·백성운·안상수·유성엽·이재선·이철우·정갑윤·정영희·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희철·이한성·이종혁·백성운·김재윤·이진삼·이인기·구본철·정병국·박종희·임동규·김효재·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김장수·김용구·변웅진·이해봉·임영호·이상민·류근찬·김영진·김낙성·김창수 의원 발의)(계속)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정권·강석호·김영록·이무영·장세환·강운태·정하균·황우여·우제창·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최규식·이무영·권경석·조진형·강기정·김유정·김충조·김희철·이윤석·김태원·신지호·유정현·이은재·이인기·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이진삼·김정권·유기준·신상진·구본철·박종희·송영선·김희철·원희목·김우남·김재윤·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소남·김효재·강석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현·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송영길·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임동규·이한성·김정훈·이균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백성운 의원 발의)(계속)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임동규·유성엽·

- 김정훈 · 이군현 · 이춘식 · 이윤성 · 최병국 · 정영희 · 허천 · 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조운선 · 전해숙 · 이계진 · 안홍준 · 조문환 · 송광호 · 주호영 · 양승조 · 김상희 · 김재윤 · 이윤석 · 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유정현 · 김성희 · 정진섭 · 정갑윤 · 권경석 · 강성천 · 손숙미 · 홍장표 · 고승덕 · 유재중 · 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최구식 · 성윤환 · 유승민 · 이한성 · 유성엽 · 나경원 · 양정례 · 김성곤 · 정하균 · 김정훈 · 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최구식 · 박민식 · 유승민 · 유기준 · 김무성 · 김광림 · 유성엽 · 박종희 · 이종혁 · 이명규 · 조문환 · 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최구식 · 박민식 · 유승민 · 유기준 · 김무성 · 김광림 · 유성엽 · 이종혁 · 이명규 · 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송민순 · 유성엽 · 정미경 · 김기현 · 이한성 · 권영진 · 안상수 · 임해규 · 김성수 · 이시중 의원 발의)(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심대평 · 김용구 · 이재선 · 이용희 · 변웅전 · 김낙성 · 이명수 · 임영호 · 이회창 · 김창수 · 박상돈 · 류근찬 · 이진삼 · 조순형 · 이영애 · 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양승조 · 홍재형 · 강창일 · 유원일 · 유성엽 · 안민석 · 권영길 · 김재균 · 강기갑 의원 발의)(계속)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강창일 · 양승조 · 김동철 · 김재균 · 김우남 · 최재성 · 최인기 · 이미경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안상수 · 유기준 · 정해걸 · 황우여 · 이화수 · 이인기 · 오제세 · 안효대 · 이한성 · 손범규 · 배영식 · 김충환 · 김태환 · 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진표 · 김재윤 · 천정배 · 안민석 · 신학용 · 박지원 · 조배숙 · 김희철 · 김춘진 · 김영록 · 최규성 · 정해걸 · 이춘식 · 김성순 · 강운태 의원 발의)(계속)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 · 박민식 · 이화수 · 이계진 · 최옥철 · 김우남 · 정해걸 · 이사철 · 조문환 · 이윤석 · 김영우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 · 우윤근 · 김창수 · 송훈석 · 임영호 · 최인기 · 이재선 · 심대평 · 최철국 · 류근찬 · 김용구 · 이영애 · 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우남 · 이미경 · 김동철 · 양승조 · 강창일 · 최영희 · 최인기 · 전해숙 · 서갑원 · 이용섭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이한성 · 주광덕 · 신영수 · 김성순 · 차명진 · 김종률 · 우제창 · 김성태 · 정해걸 · 윤석용 · 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 · 변웅전 · 심대평 · 이회창 · 박선영 · 이재선 · 이명수 · 김용구 · 김낙성 · 이진삼 · 류근찬 · 임영호 · 박상돈 · 조순형 · 이상민 · 이영애 · 김창수 · 문국현 의원 발의)(계속)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서갑원 · 안민석 · 양승조 · 이광재 ·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동철 · 서갑원 · 이미경 · 김재균 · 김우남 · 김상희 · 이석현 · 이용삼 · 김충조 의원 발의)(계속)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이혜훈 · 유기준 · 김정권 · 김태원 · 유승민 · 이화수 · 손범규 · 이해봉 · 유성엽 · 안상수 · 윤상현 · 신영수 · 강석

호 의원 발의)(계속)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진성호·황우여·안상수·안효대·권경석·임두성·고승덕·원희목·김성수·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노철래·정영희·송영선·박기춘·강운태·손범규·송민순·김을동·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이한성·임동규·이정선·이성현·한선교·박기춘·변재일·박상돈·박순자·원유철·정해걸·강석호·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조문환·손범규·윤석용·강석호·박준선·황영철·이성현·이사철·남경필·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유원일·신영수·현경병·안효대·이정선·이한성·이윤성·손범규·오제세·황영철·이낙연·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양승조·변재일·천정배·김창수·이종걸·강창일·김영진·장세환·김효석·이미경·강기정·박상돈·이명수·박선숙·문학진·강봉균·우제창·김희철·최규성·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송민순·안규백·박주선·우제창·강창일·이미경·최규식·박기춘·이두아·김재윤·이인기·이낙연·서종표·문학진·김상희·김춘진·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성수·안효대·이정선·이성현·이화수·임두성·김효재·이한성·김장수 의원 발의)(계속)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주영·김창수·심대평·이재선·권선택·안민석·김낙성·임영호·박상돈·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김을동·김성수·노철래·

박대해·김정권·정영희·이한성·정하균·심대평 의원 발의)(계속)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김창수·심대평·이명수·이상민·이재선·이용희·임영호·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임동규·신영수·정수성·김영선·박상돈·강명순·정해걸·정갑윤·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손숙미·이정선·강성천·고승덕·신지호·배은희·여상규·나성린·강석호·윤석용·정미경·김금래·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김소남·손숙미·정미경·강명순·공성진·이군현·이애주·이종구·이정현·이화수·김옥이·이은재·조윤선·김금래·안홍준·이한성·권경석·황진하·정옥임·신상진·김성수·강승규·이병석·박영아 의원 발의)(계속)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손범규·이명수·이한성·임두성·김성수·김낙성·고승덕·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유기준·강성천·유성엽·황우여·한선교·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명수·김을동·박상은 의원 발의)(계속)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록·신성범·김종률·조진래·이인제·송훈석·송광호·이용삼·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재성·조경태·이윤석·박병석·김유정·이미경·신낙균·김충조·오제세·최철국·김동철·최규식·이강래·안규백·김재균·원혜영·김부겸·강기정·장세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안효대·강길부·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

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희·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신학용·정영희·유기준·최영희·유성엽·손범규·이해봉·이인기·박은수·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영택·최영희·송민순·김춘진·백원우·전현희·최재성·박은수·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신학용·김상희·양승조·박은수·김성순·강운태·우제창·백재현·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성조·이한성·한선교·조문환·유일호·임동규·성윤환·윤영·정옥임·배은희 의원 발의)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양승조·송민순·강창일·김영진·김유정·조영택·박선숙·이시종·조경태 의원 발의)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재윤·양승조·강창일·김창수·박상돈·이석현·강기정·김재균·김영진·박은수·안규백·김부겸·최영희·이미경·김성순·조배숙·박지원·박기춘·김영환·조영택·안민석·김정권·우제창·문학진·이용섭·변재일 의원 발의)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이미경·김효석·이석현·백재현·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홍준표·진성호·이한성·이명수·한선교·권영세·박준선·이명규·김성희 의원 발의)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

표발의)(원유철·정갑윤·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심재철 의원 발의)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 의원 발의)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8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이달곤·정희수·주성영·고승덕·이주영·임해규·이한성·원희목·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9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최옥철·이시종·정해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92.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청원**(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93.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홍희덕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

9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우제창·변재일·이광재·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9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희철·이용삼·김재균·김동철·송영길·양승조·강창일·조영택·이미경·김우남·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안민석·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9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김성태·신성범·김선동·권택기·박민식·정태근·주광덕·황영철·김성식·조전혁·이한성·현기환·서상기·김세연·이인기·윤석용·남경필 의원 발의)(계속)

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진수희·전여옥·이혜훈·황진하·이계진·정진섭·허천·김광림·나경원·김기현·김금래·신성범·임해규 의원 발의)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신성범·이범래·유정현·성윤환·장제원·이한성·권영진·손범규·김금래·강석호·원희목·신지호·정미경·안효대 의원 발의)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우제창·김희철·양정례·고승덕·김성태·정해걸·정하균·김소남·정양석·이종구·유성엽·신상진·이진삼·임두성·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10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고승덕·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 의원 발의)(계속)
1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발의)(김희철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1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재·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1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1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정권·김성수·신지호·임해규·정해걸·이범래·김소남·이은재·김성조·이명규 의원 발의)(계속)
10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유철·백성운·이균현·임동규·현경병·최병국·진성호·김소남·이춘식 의원 발의)(계속)
1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양승조·김재균·강창일·김우남·김동철·이미경·최규식·이석현·김효석·최영희·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1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강창일·김종률·전혜숙·유성엽·김성곤·원혜영·이두아·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1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고승덕·김세연·김영진·김성태·김충환·김춘진·노철래·박진·박상은·박종희·여상규·이경재·이주영·이철우·유기준·장윤석·정미경·조전혁·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1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정태근·현경병·백성운·강승규·조문환·김영우·조진래·이화수·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1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홍희덕·권영길·강기갑·박선영·김춘진·신낙균·박은수·유성엽·조승수·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철국·전현희·이춘석·우윤근·박은수·노영민·김재균·김동철·박상돈·양승조·김성곤·이용섭 의원 발의)
1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김효석·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
1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강창일·정동영·강운태·조승수·박선숙·김춘진·김우남·김영진·강기갑·곽정숙·이낙연 의원 발의)
1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손범규·이정현·신성범·임영호·이해봉·박대해·황우여·최구식·안효대 의원 발의)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

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
미경 · 전현희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12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 · 노철래 · 정영희 · 송영
선 · 박기춘 · 강운태 · 손범규 · 송민순 · 김
을동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2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이한성 · 안상수 · 오제
세 · 홍장표 · 임동규 · 주광덕 · 안효대 · 손
범규 · 김소남 · 정미경 · 나경원 · 이성현 ·
유재중 · 유성엽 · 박은수 · 진성호 · 이정
현 · 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12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윤석용 · 고승덕 · 김태
원 · 정병국 · 정양석 · 김동성 · 신상진 · 남
경필 · 이화수 · 황영철 · 장광근 · 이윤성 ·
김효재 의원 발의)(계속)

12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종률 · 정하균 · 강기
정 · 양승조 · 유선호 · 박기춘 · 이낙연 · 서
종표 · 김희철 · 홍희덕 · 이윤석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이인제 · 이재선 · 현기
환 · 강창일 · 김세웅 · 윤영 · 김성순 · 신영
수 · 박상은 의원 발의)(계속)

12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양승조 · 유성엽 · 최규성 ·
안상수 · 박기춘 · 이화수 · 안홍준 · 김재균 ·
김희철 · 정갑윤 · 김충환 · 정하균 · 황우여 ·
장세환 · 김성수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12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2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임두성 · 김재
윤 · 김성수 · 이한성 · 유성엽 · 안홍준 · 신
상진 · 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1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
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
미경 · 전현희 ·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12시51분)

○**위원장 김충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7항까
지 87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

사일정 제89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90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93항까지 3
건의 청원,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0항까지 7
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
102항부터 제118항까지 17건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9항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
122항까지 3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
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3항부터 제129항까지 7건
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2건의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건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3건의 청원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윤석 소위원장께서 공직선거관
계법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張倫碩**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
회위원장 장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강기정 위
원, 박선숙 위원, 서갑원 위원, 양승조 위원, 유기
준 위원, 이경재 위원, 이상민 위원, 이은재 위원,
최구식 위원이 참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
정안전부, 법무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등 87건의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
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 의원 대표발
의안 등 3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
덕 의원 대표발의안 등 7건의 주민투표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3일, 24일, 30일, 12월
1일, 4일, 9일, 15일, 18일, 28일 등 총 아홉 차례
에 걸쳐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제기하신 질의 사항과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
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아울
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및 관련 청
원, 그밖에 제기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함께 심
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
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7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등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이들 87건의 법률안
은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보

왔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채택하기로 합의한 사항들을 모아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일 전 이내에 결원된 경우 승계를 금지하던 것을, 180일 전 이내에 결원된 경우 승계를 금지하던 것을 120일 내에 결원되면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50배 과태료 제도를 보완하여 부과기준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였고, 시도별 광역지방의원 총 정수는 현행과 같이 자치구·시·군의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626개 지역선거구—제주도는 제외한 숫자이고 국회의원 분구된 숫자도 제외한 것입니다—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56개 선거구가 평균인구 수 상하 60%의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실정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추어 획정한 결과 총 정수는 지역구 기준으로 제주도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2개 증설을 고려하여 630개에서 3%인 20개가 증가한 650개로 조정하였습니다.

20개 증원의 내역은 의원 총 정수가 적어 내년 교육위원회 신설 시 상임위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울산·대전·광주광역시에 각각 3인 총 9인을 증원하고, 그 밖의 11인은 인구 편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였습니다.

조정 결과 650개 선거구 가운데 3%인 20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을 다소 초과 또는 미달하고 있으나 이는 시도별 의원 총 정수의 보장 또는 제한 등의 결과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개편 등을 통하여 추가로 해소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0년도에 있을 8개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제를 도입하였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부터 범죄경력 조회서와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후보자 등록서류 중 납세에 관한 서류로는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였으며,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는 정당이 추천하는 순에 따르고, 정당의 추천순위가 없는 경우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가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후보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기를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였고, 다만 그의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임기를 마치고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였으며, 입후보 제한·선거운동 제한 관련 정부투자기관을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해당 선거별 기탁금의 20%를 납부하고, 그 후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였고, 기탁금을 납부한 예비후보자가 사망·당내경선 낙선으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대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반환하되, 사퇴·등록무효·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등인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 등인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도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 중 지정된 각 1인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찰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비후보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 5인,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 3인을 각각 증원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 등의 인원수 제한을 5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10인)으로 완화하며,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를 포함하여 상의·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미디어 선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현행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던 것을 선거일 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 불참자에 대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담·토론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홉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였습니다.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송신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선거운

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자동송신 방법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일정 고지를 비롯한의 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인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선거사무원 외에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열한 번째,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된 부분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선거일 전 90일부터만 신고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의 행위 관련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기부행위제한 규정으로 통합하되, 금품 제공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시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그 기관 명의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정당이 소속 유급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서 정당의 경비로 참석자에게 숙식·교통편의·여비를 제공하는 것,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의 참석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는 허용하도록 하였고,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선거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에 한하여 선거기간 중에 개최를 금지하였고, 정당·방송시설·신문사 외의 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후보자의 지지도·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2일 전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선거비용의 보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전화의 시외전화 및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보전

하되,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를 선거비용에 포함하고 보전하도록 하였고,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과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으며,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하는 등 선거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투표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재자 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종교시설 안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부재자 신고인을 3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30인 미만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투표자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낙선한 후보자도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고,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방선거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 시·구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선거구(군 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과 선거범죄의 엄

중한 처벌을 위하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비밀투표 위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기로 하였고, 거소투표 간섭·방해 행위와 거소투표자의 투표공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도록 제60조와 제85조 규정을 보완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에 따른 금품 등 제공 행위 외에도 선거브로커의 금품 수수, 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제기한 개정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통합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성안하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주체를 해당 공공단체로 명확히 하였고,

둘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정원이나 직급 조정이 없이 명칭만 ‘사무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3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7건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비하여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였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계속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면 정개특위에서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준선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개정(재외선거우편투표허용)에 관한 청원은 재외선거가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한정되어 실시된다는 점에서 추후에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최옥철·이시종·정해걸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에 관한 청원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사항에 비추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장윤석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갑원 소위원장님께서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 관련해서 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소위원장 서갑원**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갑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구상찬 위원, 권영길 위원, 김기현 위원, 원희룡 위원, 이범래 위원, 이용경 위원, 이춘석 위원, 정진섭 위원, 최재성 위원이 참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안 등 7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안 등 17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28일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질의 사항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할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정당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모아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간부 범위가 등록대상 간부의 범위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간부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합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안 등

16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대비 및 정치자금 운영의 현실적 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취합하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원회의 회계보고 시기와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기한 또는 사용실태 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 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셋째,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학력·경력·업적·공약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 추천보조금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여섯째,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 절차를 정리하여 정책연구소 해산 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은 예비후보

자 공약집과 선거운동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 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구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 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아홉째,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 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 번째,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 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 시 금융기관이 입금 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열한 번째, 신용카드 이용 등과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 지출 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두 번째, 단체 등이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충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서갑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56조에 의하면 본회의가 열릴 때는 또 다른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후 2시 이전에 이 회의의 모든 절차가 완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마디만 더, 질의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장윤석 소위원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소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기초의원들에 대한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까? 이것 논의는 유보되고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小委員長 張倫碩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법안이 나왔는데 그 법안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것은 계속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小委員長 張倫碩 그 법안이 전체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이 법을 만약에 합의가 되어서 바꾸면 가능하지요, 이번 선거도?

○小委員長 張倫碩 정개특위를 2월까지 연장을 해 준다면 이치상으로는 가능하고 연장을 안 하면 물론 불가능한데 그것은 기초적인 전제가 우리 특위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갑원 위원 공직선거법은 합의가 끝났으니 까.

○이상민 위원 예?

○서갑원 위원 공직선거법은 여야 합의 사항만 처리하기로……

○이상민 위원 여야가 지금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간사 사이에 합의한 거지 다른 정파는 합의 안 했잖아요.

○서갑원 위원 그러니까 합의해서……

○이상민 위원 합의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를 하십시오.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지요. 한나라당의 장윤석……

○서갑원 위원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간다고 지금 장윤석 위원 말씀하셨고……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서갑원 위원 소위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공직

선거법은 종료된 거지요.

○이상민 위원 일단은……

○小委員長 張倫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정개혁위에 계류된 백수십 개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선거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심사했지만 그 법안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된 법안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은 당 정치개혁 특위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지요. 지금 서갑원 간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은 마땅치 않은 발언이라는 거지요.

○서갑원 위원 오늘 우리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년 6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의 준비를 위해서 룰을, 이 법들을 정비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후보자들에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의 문제를 계속해서 더 논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회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늘 선거법 처리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서갑원 위원 물었잖아요.

○이상민 위원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제 말씀들어보십시오. 위원장한테 발언 얻고 하셔야지.

○서갑원 위원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상민 위원 그 합의가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하고 서갑원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더 논의하지 말자는 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보니까 장윤석 간사님 말씀대로 이것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小委員長 張倫碩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이 지나면 이 법안은 반려되거나 할 겁니다.

○이상민 위원 정개혁위……

○小委員長 張倫碩 그런데 정개혁위에 관해서 지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는……

○위원장 김충조 2월 28일.

○小委員長 張倫碩 2월까지 필요한 경우에 활동기한을 연장하겠다 하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서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심의 범위와 내용이 그냥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처리하는 것은 합의된 것들만 통과시키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小委員長 張倫碩 정치개혁특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장 김충조 이상민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민 위원 지금 서갑원 위원하고 얘기가 엇갈려서……

○위원장 김충조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복수 후보 추천할 때 정당이 추천하는 순으로 우선순위 했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張倫碩 예.

○이상민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순위를 추천을 하도록 한다면 선관위가 다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정당한테 그것을 넘길 이유가 있나요?

○小委員長 張倫碩 그것은 위원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가, 나, 다로……

○이상민 위원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합의하신 거고 안건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이게 합의되는 게 아니지요.

○小委員長 張倫碩 그러게……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 추천순에 따라야 될 특별한, 원칙적으로 1순위를 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런 사정이.

○유기준 위원 공천을 정당에서……

○小委員長 張倫碩 정당에서 하나까 정당에서 가져오는 것대로 하겠다……

○이상민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편의성이나 공정성 시비 논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아예 통합적으로 선관위한테 넘기는 것이 어떠한가 제 의견입니다.

○**小委員長 張倫碩**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반대로……

○**이상민 위원**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제 의견이 어떨지 한번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이게 분명히 위원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헌법 재판소 판결 전까지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8쪽에 입후보자의 경우 90일 전까지 사직토록 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리고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小委員長 張倫碩**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괄호하고 선거법이 그 3개 단체를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원용한 것이고 제가 소위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상민 위원**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까지 다 올라와 있잖아요.

○**小委員長 張倫碩**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 그것이 준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법이……

○**小委員長 張倫碩** 그 3개 단체를 저희들이 새로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공직선거법에 그 3개 단체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 것 중에 대표자는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90일 전에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 말고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원칙적인 기준 없이 3개 단체에만 이렇게 한정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점에 저는 위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요.

○**小委員長 張倫碩**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선거구제 기초위원의 경우 대표성이나 실무상 한 정당이 동일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했을 때 순서, 여러 가지 점에서, 또는 소지역주의가 더 심화되는 문제, 또 중대선거구제 했을 때 선거 비용이나 의정활동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등등, 또 소지역주의로 지역주의의 대립 갈등이 심화된다는…… 저는 비교 형량한다면 소선거구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많은 쟁점이 됐기 때문에 소위에서만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해지고 합의가 안 된 점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小委員長 張倫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좀 우매해서 그런지 법을 잘 모릅니다. 전공도 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가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정당 추천 후보의 순위 이런 것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개혁위원회가 처음에 전체회의 시작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소선거구제가…… 국민 의사에 반한다, 또 많은 분들이 소선거구가 더 효율성이 있다, 또 중대선거구제의 난점·단점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소선거구제, 시도의원선거도 소선거구제 또 아까 이상민 위원 말씀하셨지만 선거비용의 과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가지고 소선거구제로 거의 80~90%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간 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여야 지도부들이 관여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다 소선거구제로 하는데 구의원들만 왜 중대선거구제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 개혁을 하자고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것 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전혀 국민 의사에 반하고 위원들의 성격에 반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 소선거구제로 바꾸어서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지금 들어오실 때 다 그런 말씀 하

셨지 않습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정치 개혁을 하자고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정치개혁을 정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국민에 반하는 의사를 당 지도부가 관여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따라가서 예전의 정치력으로 돌아간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소선거구제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또 하나 소위에서도 다투다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무슨 후원금을 허락한다……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원금을 허락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업자들이 돈 안 갖다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여야 지도부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따라오라, 이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다시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 제의할 테니까 이것 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당 지도부하고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를 누가 있어야 될 텐데……

○양승조 위원 제가……

○구상찬 위원 수정 제의는 동의가 있어야 될 텐데……

○위원장 김충조 신청 순서대로,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 이상민 위원님, 구상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개특위 결정 사항은 지금까지 교섭단체 여야 간의 어떤 결단 사항으로 결정이 많았던 점도 말씀드리고요. 소선거구제 필요성이라든가 논리적인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의 광역시의원·도의원이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의회라든가 경기도·인천시 의회 같은 경우 지역구에 한 당이 100% 독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단체장에 대한 어떤 견제 내지 통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당이 100% 독식하는 상황 더구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기초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기초의회까지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을 때 만약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100% 독식한다. 그럼 단체장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민주주의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구도를 심화시키는 제도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가 여성분들의 의회 진출 발판이 되는데 비례대표 확대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결정에 따라서 군 단위에서 광역의원 숫자가 인원이 축소된 곳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피해해지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 피해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고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좀전에 우리 구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시켜서 처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말 이름 그대로 광역의원이고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이라는 것은 읍·면·동별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기초단위에 있는 생활공동체 그걸 대변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기초의원이지 광역의원하고 똑같은 선거구를 가지면서 거기에 2명, 3명, 4명 뽑으면 기초의원이고 1명 뽑으면 광역의원이고 얼마나 그거 황당합니까? 똑같은 선거구인데. 차라리 그러면 광역은 A, B라 그러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을 기초의원으로 붙였으면 기초생활 단위에 맞도록 그 공동체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 풀뿌리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같으면 당연히 기초의원은 읍·면·동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 논리가

맞다고 보는데 그게 뭐 좀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구상찬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의원 의원들의 경우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려는데 우리 장윤석 위원님……

선관위에 그림 차라리 물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 계셔서.

47조5항을 신설하면서요, 선거법인데요. 47조5항을 신설하면서 시·도 의회 의원 선거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씩을 추천하도록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 취지가……

그러면 A라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광역의원을 3명 뽑고 기초의원을 5명 뽑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8명 중의 1명이 여성이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광역의원도 1명이어야 되고 기초의원도 1명이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거기에 지금 명확한 취지가……

○유기준 위원 앞에서 한 거, 앞에서……

○김기현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명확한 취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위원장 김충조 위원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가 아니고 광역과 기초를 망라해서 1명 이상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거기 괄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하며’ 이래 냈는데 이 말의 취지가 그러면 A라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중구, 동구, 남구 이렇게 3개 구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각 구마다 1명씩 여성이 공천돼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위원장 김충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마다 과거처럼, 지금 이제 1인 구도 생겼습니다마는 2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법에는 2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취지가……

○위원장 김충조 하나의 기초단체가 분할될 경우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작

은 구·시·군의 경우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에 한해서 선거기간 중에 개최를 금지한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이거 3개만 특별히 지금 정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은 그냥 아예, 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만 해놓은 것인지를 잘 이해가 안……

○위원장 김충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아마 예시적으로 든 것이고요. 그와 유사한 성격 가진 모임이라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제가 조항을 찾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혹시 몇조쯤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조해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맞습니까? 조항이 그게 몇조에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조해주 조항이요?

○김기현 위원 예, 몇조인지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한참 찾았는데 잘 안 보여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조해주 공선법 103조3항입니다. 여기 유인물……

○김기현 위원 103조3항이요? 정확하게 지금 문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조해주 유인물 168쪽.

○김기현 위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아,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은 예시적으로만 해놓은 것이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은 단체의 성격일 때 똑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조해주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거구제를 하도록 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 박선숙 위원이 먼저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저기 이경재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사실은 발언 신청하셔서요.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이 있어서……

○**위원장 김충조** 그래요? 그러면 순서를 좀 양해하시죠.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박선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기현 위원께서 제47조, 이것은 아마 이것도 정치 개혁의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반드시 한 분씩은 추천하도록 하자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의무조항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위원들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의무조항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충조 위원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선거구에서 도농복합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에서 군 단위가 있는데 이게 구하고 합해서 특례조항으로 세 군데가 사실은 지난번에 예외적으로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한 온전한 구하고 합치면 괜찮은데 구 중의 일부를 떼서 군 지역하고 합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인천 서구다 그러면 시의원이 네 구인데 그중의 하나만 이쪽 군 지역하고 합쳐서 되는데 이 지역에 여성을 한 사람을 반드시 추천해야 되는 거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자치단체에는 이쪽에서도 하나 되고 또 다른 쪽에서도 한 사람 내야 되고 두 사람이 됩니다. 이걸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쉽게 수정안을 낸다면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구 중에서 이런 도농복합의 특례지역은 예외로 한다.’ 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충조** 질의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계속 위원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우리 정개특위의 천병호 수석……

우리 사무총장이나 수석 가운데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그래요, 그러세요.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그 조항 47조는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명을 추천하되 예를 들면 군 지역은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아도 되고 구와

군이 같이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들어 있을 때는 군 지역이 아닌 구 지역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군 지역이 아닌 지역의 구 전체가 지역구라면 모르겠는데 한 구가 아니고 그중의 4분의 1 정도만 이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의원, 구의원이 4명인데 그러면 그중에 여성 1명을 추천한다면 25%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니까 이걸 다른 데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치단체에서는 두 사람의 강제 추천이 되는 거다, 그런 모순도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예외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당법과 관련해서 기초단체장의 선거에도 후원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요즘 토착비리라는 게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기초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경유착이 아주 심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현역 단체장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게 후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곧 비리로 나타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치 개혁이 아니라 후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우리 이기선 총장님 나와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

○**위원장 김충조** 아니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누구 실무자 답변토록 해도 괜찮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아까 수석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충조** 우리 이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박선숙 위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47조,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기초의회 선거 후보에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은 진일보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서갑원 의원도 법안으로 제출했었던

비례대표의 확대 문제가 소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47조의 정신이 여러 가지 여성들의 지방자치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 비례대표의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제안들의 정신을 담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한다면 그 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1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을 하도록 각 정당이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제가 소속한 정당에서는 그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종교시설에의 투표소 설치 금지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투표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종교시설에 여전히 투표소가 설치된 사례들이 있어서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금지 문제에 대하여 저도 주장을 했고 또 여당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고 지역의 경우에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에 너무 먼 지역에, 대체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그런 법안을 모색키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이 안이 최종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선관위에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현행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것이 법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에 비추었을 때 법조문에 반영하려고 했던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제출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지금 거론되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에 관해서는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 선거구제 문제에 관한 논의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정되지 않았던 안이라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합의가 된다면 수정안으로서 좀 성립이 되고, 일반적인 처리절차에 따른다면 그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표결절차를 거친다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합의될 수 있는가 여부를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 김충조 여성 위원께 양보해 주시지요.

○유기준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유기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李恩宰 委員 저도 역시 47조5항 신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선숙 위원님하고는 의견을 좀 달리해서 사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5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좀 후퇴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역의회 의원이나 그다음에 기초의회 의원의 국회의원 한 지역구당 적어도 한 명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광역이나 기초 의회 전부 다 이것을 포괄해서 국회의원 한 지역구당 한 명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항에 되어 있는 100분의 30보다도 사실은 이게 못 한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기초로 한정을 하든지, 아마 광역으로 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시도 전체로 봐서 몇 %를 여성으로 공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고 이것은 기초의회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달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으로 했다가는 진일보 발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진일보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비난의 여론을 저희가 받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선원들에 대해서 선상투표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의논을 한다고 해 놓고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론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선장이 선원에게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비밀 투표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또 팩시밀리를 이용한다는 기술적 난점 때문에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전된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에 저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역시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과 저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왜,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다른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선거구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또 지역에 가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인지 알 수 없다, 헷갈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양꼬 빠진 찌뽕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한 것은 지난 17대 국회 여야의 야합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야합의 산물을 이제 더 이상 계속 추진해야 될 유산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법원에서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심정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물론 깨끗한 선거를 하고 돈 선거를 배척하고 잘못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옳다고 하겠으나 그 지나친 처벌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정치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고 좋은 신인 또 좋은 정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통찰해 주

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장윤석 간사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개특위 심사결과 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에 따른 금품 등 제공행위 외에도 선거브로커의 금품 수수, 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제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사기죄나 특가법의 일반적인 재산 범죄로 다루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로 된 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선거법에 넣는다고 그러면 일반 재산 범죄를 우리가 이 선거법에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부분은 법체계상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張倫碩 委員 그게 일반 형사범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현장에서 표를 모아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직접 유권자에게 돈을 준 경우 또는 주지 않은 경우에, 돈을 유권자에게 주었다면 기부행위로 처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사기가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좀 불명한 상태지요, 사기 범위를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유권자에게 다 줄 생각이었다면 아예 사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가 되는지와 관계없이 선거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훔는 자들, 이른바 브로커는 처벌규정을 두어서 한번 역제를 해 보자 하는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한번 이 처벌규정을 운영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삭제를……

○유기준 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검찰이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잘못 기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었다면……

○張倫碩 委員 법무부에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예를 든 것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어쨌든 브로커는 좀 역제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김충조 위원장이 먼저 의사진행성 발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회의 벽두에서 국회법 제56조 관련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가 개회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상임위를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개회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드신 탓으로 해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2시 전까지 이 회의가 종결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제가 간사들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1, 2분이면 되겠네요.

○박선숙 위원 제가 그 사이에 30초만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김충조 예, 30초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제가 앞서 선관위에 법 147조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금지에 관해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이미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아까 김기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잘못되었네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인 이상’ 그렇게 정정합니다. 아까 제가 ‘자치단체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서갑원 위원 그런데 이경재 위원님께서 아까 제기하신……

○위원장 김충조 서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서갑원 위원 예, 이경재 위원께서 제기하신 군과 구, 시 단위가 같이 결합된 선거구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강화군은 독립된 자치단체인데 인구가 부족해서 한 선거구를 이루지 못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최소 인원을 보충을 해서 결국 한 선거구를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천 서·강화 갑·을 뭐 이렇게 해도 군이 포함된 지역은 역시 최소 단위의 선거구를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촉박해지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정개특위 활동을 2월 말까지로 그렇게, 아직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논의가 미진한 것은 계속해서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그때 논의를 하고 그 논의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토론을……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김충조 2시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용경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3제2항을 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틀인데 이 기준을 선거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몇 명을 내보내라.’ 그것은 말이 되지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데서 한 사람씩 나와라.’ 이것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張倫碩 委員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원을 가지고 구성하는데 왜 교섭단체가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입법 기술상 또 입법 체제상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원용했던 것이어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법률을 논의할 때에는 한번 심도 있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전의 입법례에 따라서 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입법에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이상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47조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특례를 규정해서라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선관위가 운영을, 해석을 그렇게 해서 군과 자치구의 일부가 결합해서 선거구를 이룬 경우에는 군이 주고 구의 일부가 결합된 것은 이것을 군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관위의 해석도 그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총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위원장 김충조 해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2시가 넘어가면 불가피하게 본회

의 끝난 뒤로 이 회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좀 속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정법률안 그리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각 소위에서 심사해 온 이 관련 법안들은 전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 또 면밀한 축조심사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순서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금 전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소위에서 마련한 의사일정 제8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가……

○**서갑원 위원** 이의 있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지요.

○**위원장 김충조** 아니, 그 뒤에 제가 읽어야 될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본회의가 끝난 뒤에……

○**서갑원 위원** 지금 하셔도 됩니다.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하세요.

○**서갑원 위원** 표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구상찬 위원**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지. 3분의 2가 반대하는데 무슨 소리……

○**李恩宰 委員** 47조5항은 안 돼.

○**張倫碩 委員**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이 법안은 처리를 하도록 하지요.

○**유기준 위원** 표결하자고요.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張倫碩 委員**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일단은 오늘 2시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끝난 뒤에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에 의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서의 회의에서 2시에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 개회 관계로 상임위를 잠시 정회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개회 중에 상임위 회의를 계속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을 득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회 이전에 소위에서 마련한 의사일정 제8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위원회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안을 우리 정개특위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제가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관계로 가결 선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소위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제기한 개정 의견을 수용해서 종합하여 마련한 의사일정 제90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제출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련한 청원, 의사일정 제92항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련한 청원, 의사일정 제93항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이상 3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1항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92항 공직선거법 개정 이 부분은 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93항 선거권 연령 조 정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의 청원은 계속 심사하 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조 예.

○이용경 위원 제일 처음에 의결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들었는데 그냥……

○위원장 김충조 지금요?

○이용경 위원 아니, 아까 제일 처음에 하신 것 그것은 이의가 있었다는 것만 기록에 남겨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조 예.

○이경재 위원 아까 47조와 관련해서 끝날 때쯤 에는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라고만 얘 기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서갑원 위원께서 단서 조항을 달기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 단 것인지 하 는 것 확인……

○위원장 김충조 그렇습니다. 특례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당법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소위 에서 마련한 의사일정 제101항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위원회안)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치자금법 순서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당·

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소위에서 마련한 의사일정 제119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 회안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129항까지 3건의 국민투표법과 7건의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는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 로 앞으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 계 자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기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강병규 제2차관 계시지 요?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고 하는 인사 말씀을 올 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그리고 뜨거운 감사의 뜻을 바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장기정	구상찬	권영길	김기현
김충조	박선숙	서갑원	양승조
유기준	이경재	이범래	이상민
이용경	이은재	이춘석	장윤석
정진섭	주호영	최구식	최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	-----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기선
선거실장	조해주
정당지원국장	김용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 표발의)

(2009. 11. 10 주승용·최철국·전현희·이춘석·우윤근·박은수·노영민·김재균·김동철·박상돈·양승조·김성곤·이용섭 의원 발의)
11월 1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16 이철우·김성조·이한성·한선교·조문환·유일호·임동규·성윤환·윤영·정옥임·배은희 의원 발의)
11월 1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17 홍재형·양승조·송민순·강창일·김영진·김유정·조영택·박선숙·이시중·조정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17 전병헌·김재윤·양승조·강창일·김창수·박상돈·이석현·강기정·김재균·김영진·박은수·안규백·김부겸·최영희·이미경·김성순·조배숙·박지원·박기춘·김영환·조영택·안민석·김정권·우제창·문학진·이용섭·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24 김정훈·진수희·전여옥·이혜훈·황진하·이계진·정진섭·허천·김광림·나경원·김기현·김금래·신성범·임해규 의원 발의)

11월 2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26 강기정·김동철·이미경·김효석·이석현·백재현·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26 강기정·김동철·김효석·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7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27 유성엽·강창일·정동영·강운태·

조승수·박선숙·김춘진·김우남·김영진·강기갑·곽정숙·이낙연 의원 발의)

11월 3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1 이정선·홍준표·진성호·이한성·이명수·한선교·권영세·박준선·이명규·김성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1 서병수·손범규·이정현·신성범·임영호·이해봉·박대해·황우여·최구식·안효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일 회부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3 주성영·신성범·이범래·유정현·성윤환·장제원·이한성·권영진·손범규·김금래·강석호·원희목·신지호·정미경·안효대 의원 발의)

12월 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7 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

12월 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11 원유철·정갑윤·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심재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11 원유철·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22 장제원·김우남·이명수·이한성·황진하·서상기·김세연·정수성·이은재·박준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22 최재성·강기정·원희룡·최영희·
김춘진·서갑원·문학진·김재균·김영진·
이찬열·백원우·김우남·전현희·이종걸·
박선숙·조영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22 최재성·백원우·전현희·김춘진·
이찬열·이종걸·안민석·최규식·박선숙·
조영택·박주선·김영진·강창일·강기정·
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3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23 이은재·안효대·여상규·강성천·
나성린·장제원·이범래·김소남·임동규·
이명수 의원 발의)

12월 24일 회부됨

○청원 회부

선거권 연령 조정에 관한 청원

(2009. 11. 13 서울 용산구 남영동 40-13층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장 홍지현 외 1인으
로부터 홍희덕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13일 회부됨